

1. 개정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제17447호, 2020. 06. 09. 공포,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되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명칭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법 제45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2조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5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45조에 따른 <u>한국시설안전공단</u> (이하 “ <u>한국시설안전공단</u> ”이라 한다)	3. 「 <u>국토안전관리원법</u> 」----- ----- <u>국토안전관리원</u> (이하 “ <u>국토안전관리원</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 ----- -----

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국토안전관리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국토안전관리원 -----

-----.

③ 국토안전관리원 -----

-----.

④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토안전관리원-----

-----.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국토안전관리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안전관리원-----

-----.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
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
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
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
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
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
승계) ① 시·도지사는 법 제38
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
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
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
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
일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
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

국토안전관리원-----

-----.

④ · ⑤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안전관리원-----

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u>한국시설안전공단</u>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생략)	----- -----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수료 등) ① ----- ----- ----- ----- <u>국토안전관리원</u>----- -----. ② (현행과 같음)
---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국적			
	주소					
	※ 해당 기술자 관련 교육 등 안내를 위해 필요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수신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② 건설기술인 분야 및 기술등급	직무분야	기술등급 (등급 취득일) 초/중/고/특급	전문분야	협회등록번호		
				기술자: 기술인협회		
				건축사: 건축사협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협회		
③ 국가기술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 . .			
			. . .			
④ 교육사항	구분	분야	교육기간	수료일	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⑤ 근무처	기관명		근무기간		구 분	
			. . . ~ . . .			
			. . . ~ . . .			
⑥ 해당 분야 및 참여분야	분 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정기안전점검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정밀안전진단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성능평가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1. 일반현황

① 업체명		대 표 자		② 등록분야	
③ 용역명		과업기간			
관리주체명		대 표 자		전화	
구분		공공 · 민간			
④ 준공금액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⑤ 공동수급 (비율, 방식)		⑥ 계약방법

2. 참여업체 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등록분야	도급비율(%)	도급액
대표					(천원)
공동(1)					(천원)
공동(2)					(천원)

3. 시설물의 현황

⑦ 시설물명	⑧ 시설물구분	⑨ 종류	⑩ 종별	⑪ 준공일	⑫ 종전 안전등급
	⑬ 시설물의 위치		⑭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4. 점검 · 진단 실적

⑮ 점검등의 종류		⑯ 수행분야	
⑰ 점검 · 진단 준공금액 (점검 · 진단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⑱ 안전등급
⑲ 중대한 결함 등			
주요 점검진단 결과			
주요 보수 · 보강(안)			
⑳ 내진성능평가	대상여부	대가반영여부	이전 평가여부
	주요 평가결과		

5. 성능평가 실적

㉑ 성능평가 준공금액 (성능평가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⑯ 수행분야
구 분	종합 성능	안전 성능	내구 성능
등 급			
주요평가 결과			

※ 점검 · 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

6.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㉒구분	성명	생년월일	㉓ 과업참여기간	㉔ 직무 분야등급	㉕ 직무 (참 여)분야	㉖소속
책임			. . . ~ . .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6. 기술심의(자문)

㉗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	
첨부자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①의 "업체명"란에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자체수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②의 "등록분야"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도로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종합 중 1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로 적습니다.
- ③의 "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 ④의 "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 ⑤의 "공동수급"란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적고 ⑦의 "시설물명"란에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 ⑥의 "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 ⑦의 "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 ⑧의 "시설물구분"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옹벽·절토사면·공동구
- ⑨의 "종류"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도로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고속철도교량·고속철도터널·도시철도교량·도시철도고가교·도시철도터널·일반철도교량·일반철도터널·보도육교·갑문시설·계류시설·방파제·파제제·호안·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전용댐·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공동주택외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철도역시설·도시철도역시설·일반철도역사·광역철도역시설·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관람장·위락시설·공공업무시설·지하도상가·하구둑·방조제·수문 및 통문·제방 및 부속시설·다기능보·배수펌프장·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옹벽·절토사면·공동구·기타
- ⑩의 "종별"란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이 제1종시설물인 경우에는 "1"로, 제2종시설물인 경우에는 "2"로,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인 경우에는 "3"으로,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⑪의 "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 ⑫의 "중전 안전등급"란에는 해당용역 전에 실시한 점검등에 의한 안전등급을 적습니다.
- ⑬의 "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 ⑭의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구 분	형 식	규 모
교 량	()	연장()m, 최대경간장()m, 차로수()
복 개 구 조 물	()	연장()m, 가로()m, 세로()m,
터 널	()	연장()m, 차로수()
지 하 차 도	()	연장()m, 차로수()
갑 문 시 설	()	최대통과선박톤수()톤
방 파 제 · 파 제 제 · 호 안	()	연장()m, 높이()m
계 류 시 설	()	최대계류선박규모()톤
댐	()	저수용량()천만m ³
건 축 물	()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 ²
지 하 도 상 가	()	지하()층, 연면적()m ²
하 구 독	()	연장()m, 높이()m
수 문 및 통 문	()	가로()m, 세로()m, 문비수()
제 방	()	연장()m, 높이()m
다 기 능 보	()	연장()m, 높이()m
배 수 펌 프 장	()	총 펌프용량()m ³ /분
상 수 도	()	공급능력()만m ³ /일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	최대처리용량()m ³ /일
옹 벽	()	최대높이()m, 연장()m
절 토 사 면	()	최대연직높이()m, 단일수평연장()m
공 동 구	()	연장()m, 련수()련, 폭()m

15. ⑮의 "점검등의 종류"란에는 정기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안전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정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6. ⑯의 "수행분야"란에는 1)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분야 중 해당 시설물을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한 분야를 적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를 고려하여 수행분야와 일치하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17. ⑰의 "점검·진단 준공금액"란에는 해당 시설물별 점검·진단 용역의 준공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고, "점검·진단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18. ⑱의 "안전등급"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⑲의 "중대한 결함 등"란에는 중대한 결함 등의 종류, 해당 부재 등(위치) 및 해당부재의 보수·보강(안)을 적습니다.
20. ⑳의 "내진성능평가"란에는 내진성능평가 부위 또는 부재, 평가결과(내진성능 확보·부족), 내진성능 부족 부재 및 확보 방안 등을 적습니다.
21. ㉑의 "성능평가 준공금액"란에는 시설물별 성능평가 용역 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성능평가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22. ㉒의 "구분"란에는 기술자의 참여형태를 구분하여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㉓의 "과업참여기간"은 기술자가 참여한 기간으로 과업 배치일과 해제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24. ㉔의 "직무분야등급"란에는 용역에 참여할 당시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25. ㉕의 "직무(참여)분야"란에는 별표 6의 직무분야를 적고, ()안의 실제 참여한 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위 내용은 참여경력 산정에 활용됩니다.
ex) 토목(교량 및 터널), 토목(수리시설), 안전관리(건축), 안전관리(수리시설), ……
26. ㉖의 "소속"란에는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의 명을 적습니다.
27. ㉗의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를 적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8.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기술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사용용도	☐ 적격심사 ☐ PQ ☐ 기타			제출처	
실적확인 내용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 . ~ . . .		부수	부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수수료	
				법 제6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사용용도		[] 적격심사		[] PQ		[] 기타		제출처	
용역명		관리주체		용역기간		설계금액 또는 예가		준공금액	
								출자비율 (분담내용)	
연번	시설물명	관리번호	종별 및 종류		형식 및 규모		용역 구분	수행금액	
			종별	종류	형식	규모			
1									
2									
3									
책임(참여)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	직무분야	과업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현황	처분구분	처분일자	분야	처분내용	처분사유				
부실판정 현황	판정구분	판정일자	분야	대상시설	판정사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